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 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4개(수원, 평택, 고양, 남양주)에 불과함.
- 이에,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8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572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24일

발의의원 : 김영희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 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4개(수원, 평택, 고양, 남양주)에 불과함.
- 이에,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보건의료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